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탈북민 학교에 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및 매각 특례 마련 〉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603)

2025. 2.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4. 11. 14.
3. 회 부 일 : 2024. 1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1,770여명임.

이 중 제3국에서 출생하여 중도 입국한 탈북학생은 주로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으며, 학업 공백으로 인해 낮은 학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입국 초기 교우관계 형성 및 학교 적응 과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탈북학생들의 학업중단은 일반학생의 약 2배 수준에 달함.

한편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공유재산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학교 부지를 찾는 등 불안정한 여건으로 탈북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움 또한 특례의 대상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제한되어 있어 탈북청소년의 10%가 다니고 있는 대안학교나 대안교육기관

은 특례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게 하고, 대안교육기관도 특례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게 하고, 대안교육기관도 특례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안 제24조의3).

현행	개정안
제24조의3(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3(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 ----- ----- ----- -----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대부·매각하거나-----.
②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매각과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u>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현행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은 법 제24조¹⁾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면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법 제24조의²⁾는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특례의 대상인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

1) 제24조(교육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보호대상자의 학력 진단·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및 학습활동의 지원 등 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24조의3(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포함시키고(지원대상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지원범위 확대) 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 수는 2024년 4월 기준 2,645명으로 그 중 북한출생 학생 수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에 제3국출생 학생 수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도에는 탈북학생 중 약 71.7%가 중국 등 제3국 출생이고, 2024년에는 최초로 국내 출생 자녀를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2,645명 중 북한 출생이 14.4%, 제3국 출생이 43.6%, 국내출생이 42%임.

< 탈북학생 통계 >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475	2,517	2,538	2,538	2,531	2,437	2,287	2,061	1,769	2,645
북한출생	1,225 (49.5%)	1,201 (47.7%)	1,101 (43.4%)	1,008 (39.7%)	982 (38.8%)	907 (37.2%)	789 (34.5%)	635 (30.8%)	511 (28.9%)	381 (14.4%)
제3국출생	1,250 (50.5%)	1,316 (52.3%)	1,437 (56.6%)	1,530 (60.3%)	1,549 (61.2%)	1,530 (62.8%)	1,498 (65.5%)	1,426 (69.2%)	1,268 (71.7%)	1,153 (43.6%)
국내출생	-	-	-	-	-	-	-	-	-	1,111 (42.0%)

자료: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4년 4월 기준, 국내출생 자녀 비율은 2024년 최초 조사)

□ 이처럼 탈북학생 중 제3국 출생 학생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84호, 시행 2025. 4. 23.)은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를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변경하여 제3국출생 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음.

□ 또한, 통일부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예외적으로 보호대상자가 아닌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의 교육 및 학교적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고, 정착지원시설 내의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에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4년 3월부터 제3국 출생 탈북학생, 2019년 3월부터는 국내 출생 탈북학생에 대해서도 특성화학교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탈북학생들이 재학 중인 대안학교 등의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안학교 등 현황 >

학교명	한겨레 중고등학교	여명 학교	하늘꿈 학교	드림 학교	장대현 중고등학교
법적 성격	특성화학교	대안학교			
종류	중·고등학교 (사립)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개교일	2006. 3. 1.	2004. 9. 14.	2003. 3. 10.	2003. 3. 1.	2023.3.1
교육청 인가일	2005. 7. (설립인가)	2010. 3. (대안학교 인가)	2015. 11. (대안학교 인가)	2018. 4. (대안학교 인가)	2022.11.28(대안학교 인가)

학교명	한겨레 중고등학교	여명 학교	하늘꿈 학교	드림 학교	장대현 중고등학교
통일부 지원일	2007. 1.	2015. 1.	2016. 1.	2019. 1.	2023.3.
지원내용	운영비 지원 (인건비: 교육청 지원)		인건비, 운영비 지원		
위치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221-2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 11(북정동)	충남 천안시 충절로 535-31	부산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 76번길71(신 호동)
'24년도 지원예산 (억원)	20.7	8.1	8.1	5.7	3.0

자료: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제3국 및 국내 출생을 포함)에 대한 교육 시설인 대안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의 유상 매각이 가능하도록 할 특례를 인정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³⁾

개정안은 대안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대안교육기관까지 그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어, 다른 기관·단체·소상공인 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하라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⁴⁾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2010년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은 여명학교의 경우 2019년 12월 학교부지를 은평뉴타운 부지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는데,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학교 부지 확보 및 이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현재 강서구의 폐교된 염강초등학교를 임시로 사용(운동장과 부대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1~2층만 사용)하고 있으나 2026년에는 또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상황임.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 추가적으로 개정안과 같이 특례에 공유재산의 “매각”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경우 이는 공유재산의 “대부”보다 강력한 특례를 제공하는 것인바, 다른 입법례를 고려할 때⁵⁾ 조 제목에서 이를 포함함으로써 조 제목과 본문을 일치시키고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또한, 시행령 정비를 위해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통일부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의 유상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행안부는 대안교육기관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다른 기관·단체·소상공인 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주민 모두에게 동등한 이용기회를 제공하는 공유재산법령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67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설치등에관한특별법」 제24조(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종자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 내 전북자치도 소유의 부동산을 입주기업(「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종자기술연구단지에서 종자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